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 (Allianz New Power Rich)

### 2. 보험의 세목

보험의 종류		
1형	적립형	
2형	거치형	이율변동형 5년 이율확정형 10년 이율확정형
3형		쿠폰형
4형	즉시형	

### 3. 연금지급형태

#### 가. 1형

생존연금 지급형태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금액부		

#### 나. 2형

생존연금 지급형태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다. 3형

생존연금 지급형태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부부계약 (정액형)
		보증금액부
상속연금		

라. 4형

생존연금 지급형태		
종신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부부계약 (정액형)
상속연금		

4. 보험기간

보험의 종류	보험 기간		
1형, 2형 3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부터 Y세(45세 ~ 최고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만, 3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5년 · 10년 · 15년 · 20년)까지
		상속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4형	종신연금, 상속연금	보험계약일부부터 종신까지	

※ 3형의 경우 확정연금형 선택불가

5.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의 종류		연금개시나이 (Y)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1형		45세~80세	만15세 ~ (Y-10)세	3년, 5년, 7년, 10년~ 전기납 및 월납
2형	이율변동형	45세 ~ 80세	만15세 ~ (Y-3)세	일시납
	5년 이율확정형	45세 ~ 76세	만15세 ~ (Y-5)세	
		77세 ~ 80세	만15세 ~ (Y-7)세	
	10년 이율확정형	45세 ~ 80세	만15세 ~ (Y-10)세	

3형	쿠폰형	45세 ~ 80세	35세 ~ (Y-10)세	
4형	즉시형	45세 ~ 78세	45세 ~ 78세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 6. 보험가입금액에 관한사항

구 분	가입금액
1형	월납영업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
2형, 3형, 4형	일시납영업보험료의 100%

##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8.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보험종류	1형(월납보험료)	2형, 3형, 4형(일시납보험료)
보험료	₩150,000 이상	₩5,000,000 이상

나. 1형의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나’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한도를 적용한다.

## 9.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가. 1형과 2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마. 1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 10. 웰빙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형에 한함)

가.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나. 웰빙생활자금 지급주기는 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지급개시일(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시점의 보험계약해당일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2개월 경과시점의 보험계약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웰빙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웰빙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

라. ‘나’의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약관의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을 적용한다.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다만,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과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sub>12</sub>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외부지표산출식 = B1 × r + B2 × ( 1- r )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sub>i</sub>)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sub>i</sub>(-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sub>i</sub>(-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sub>i</sub>(-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 12. 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과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

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적용이율(이하 “자산연계 확정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나. ‘가’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회사가 각 보험종류별로 자산연계 확정이율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적용하며, 최초 보험가입시 설정한 이율확정기간(이하 “최초이율확정기간”이라 한다)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다만, 3형의 경우 10년간 확정 적용한다.

다. 2형의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계약자적립금과 3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라. 이율확정기간별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이율확정기간별 자산연계 확정이율(\%)} = \left\{ A - \frac{\log(30 \times A + 1)}{100} \right\}$$

(주)  $A = C \times 40\% + D \times 60\%$

■ C : 이율확정기간이 5년, 10년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10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 각각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 D : 이율확정기간이 5년, 10년인 경우 공신력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2개사에서 매일 공시하는 5년, 10년 만기 무보증 특수채(공사채 및 공단체) AAA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각각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상기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하여 4번째 영업일에서 13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 다만, 자산연계 확정이율(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마. 2형의 10년 이율확정형 및 3형의 경우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1.0%의 금리(이하,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이라 한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험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형의 10년 이율확정기간(최초 이율확정기간)과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지된 때에는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자산연계 확정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사. 이율확정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 1) 2형의 이율확정형에 한하여, 보험계약 최초 가입시에 이율확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율확정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때에는 종료일 도래 7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알리며,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 종료일 전까지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2)’ 에 따라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 하는 경우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직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다음날(이하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 이라 한다)의 이율확정기간별 자산연계 확정이율로 산출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부터 각각의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 4) ‘2)’ 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잔여년수가 새로운 이율확정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을 신청할 수 없다.
- 5) ‘2)’ 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에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율확정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아. 계약의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 1)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이율확정기간이 재설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율확정기간 포함)과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1 + \text{해지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 + 0.5\%} \right\}^{\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종료일(다만, 3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2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 보험가입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재설정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로 하되, 해지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해지시점의 해지 계약의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이율확정기간에 적용되는 자산연계 확정이율



로 한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13. 자산의 운용

가.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계정으로 운용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과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

다. ‘나’ 에 해당하는 계약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과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된다.

### 14. 특별계정의 설정 및 종류

이 보험계약 중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 및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 15.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가. 회사는 해당 자산연계 확정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국고채 및 특수채, 국내 신용평가기관[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KBP), 한국신용정보(NICE) 등] 2곳 이상에서 신용등급 AA-이상으로 평가 받은 회사채를 80% 이상으로 운용하며, 그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나. 자산연계 확정이율 적용 자산(다만,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은 제외)의

평균 잔존만기는 부채 잔존만기의 80% ~ 125%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다.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 및 ‘나’ 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4) ‘1)’ 내지 ‘3)’ 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라. ‘가’ 내지 ‘다’ 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1,000억 미만인 경우 회사는 ‘가’ 내지 ‘다’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6.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 웰빙생활자금 및 생존연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3)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4) 매월 계약해당일에 예정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를 총당하는 경우(다만,

예정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5) 이율확정기간 종료일(다만, 3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항 및 ‘나’ 항에 따라 자금이체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한다.

## 17. 기타사항

### 가.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2형, 3형 또는 4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형 및 4형의 경우 확정연금형은 선택할 수 없다.
- 2) ‘1)’ 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1)’ 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 나.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만, 2형의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 및 3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자산연계 확정이율 + 1.5%」로 한다.

###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라.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

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 **마.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형에 한하여,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1,000,000 이상일 경우 기본보험료의 1%를 할인한다.

#### **바.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1)' 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